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21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김부병, 주무관 이창욱 • ☎ (044) 201-3755, 3765, 4835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‘부실공사 막게 동영상 찍으라더니... 처벌없는 엔터리 감독’ 보도 관련

- 우리부는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‘17.2.4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게 주요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(건축법 제24조제7항)
-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,(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)
 - 상기사항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공사감리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의결에 따른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(건축사법 제30조의3)
- 또한, 공사감리자는 동영상 촬영 등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게 시공하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,(건축법 제25조제3항)
 -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(건축법 제110조)
- 아울러, 허가권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건축관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.(건축법 제79조, 제87조, 제113조)
- 다만, 우리부는 동영상 촬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11.20, 매일경제) >

- ◆ ‘부실공사 막게 동영상 찍으라더니... 처벌없는 ‘एं터리 감독’ ’ 보도 관련
 - 주요공정 촬영 의무를 공사시공자에게 부여하였으나, 이를 어긴 공사시공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
 -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항변하였으나,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은 공감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부병 사무관(☎ 044-201-37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